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서

## 제 1 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업라이즈투자자문(주)(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로보어드바이저 퇴직연금 적립금 관련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 또는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고객”이라 함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중 회사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3. “계좌”라 함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해 고객이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한 계정으로 투자일임업무를 위해 관리계좌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4. “로보어드바이저”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제 6 호에서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말한다.
5.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라 함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하여 제공되는 투자일임서비스를 의미한다.
6. “비대면”이란 고객이 회사로부터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고객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7. “알고리즘”이란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및 리밸런싱 등의 운용 방식을 말한다.
8.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으로서 근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근퇴법령"이라 한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상의 적립금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10.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12. "퇴직연금 적립금"이라 함은 근퇴법령에 의해 고객이 납입하거나 고객을 위해 납입된 부담금 및 당해 부담금의 운용으로 형성된 자산(현금 포함)을 말한다.

### 제 3 조 (계약의 내용)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세부계약조건 내용은 <별지>에 따른다.

### 제 4 조(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1. 자본시장법 제 9 조 제 21 항의 "집합투자증권"
2. 자본시장법 제 234 조의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이하"ETF"라고 한다)
3. 그 밖의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 제 5 조(투자일임의 범위 및 내용)

- ①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실행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투자대상의 종료,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제 1 호 내지 제 5 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 ②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보고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전략에 대한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 6 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최소계약금액 이상의 자산을 예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에 동의한 날로부터 1 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 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가입 당시 연장 반대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가입 당시 연장 반대를 표시하였을 경우 또는 회사가 제 5 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되지 않고 운용을 종료한다.
- ⑤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 9 조의 지정기간 만료 등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퇴직연금 적립금 관련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별지>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별지>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신규판매 및 계약연장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4. 투자일임재산이 제 1 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제 7 조(계약의 적용범위)

- ① 이 약관에 따른 일임계약은 고객이 계좌별로 추가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연간 900 만원까지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제 1 항의 추가 납입한 원금이란 퇴직급여 이전 금액을 제외한 고객이 추가로 임의 납입한 원금 잔액으로 중도인출 시 인출된 납입원금 차감 후 잔액을 말한다.
- ③ 제 1 항의 900 만원은 연간 한도로 매년 900 만원까지 납입 가능 원금이 증가되며, 동일 계좌에 복수 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전체 계약 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동의 하에 퇴직급여 이전금액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회사는 동의 절차 진행에 앞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1.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장기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점
2. 퇴직급여 적립금은 과거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 보전 성격이 있어 고객이 임의 납입한 금액만을 운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점
3. 고객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가입자 임의 납입금액과 퇴직급여 적립금 구분없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 제 8 조(금지행위)

-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인수한 증권이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특수채 또는 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발행조건, 절차 등을 충족하는 채권인 경우,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근퇴법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에서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 ② 회사는 근퇴법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상의 운용방법 별 투자한도를 준수하여 운용지시 하여야 한다.

#### 제 9 조(투자일임방법 등)

- ① 회사는 고객에게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 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 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 ⑤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서면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⑥ 제 5 항의 특별한 사유란 회사가 고객의 요구에 따르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사가 정상적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1.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자동화된 운용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2. 로보어드바이저가 통과한 코스콤 테스트베드 운용심사의 통과 조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
  3. 기타 기술적 제한, 법령상의 제한, 또는 본 약관을 포함한 계약상의 제한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 **제 10 조(퇴직급여 지급 등을 위한 자산의 인출 등)**

- ① 고객계좌에서의 인출은 퇴직급여 지급 등 근퇴법령 및 관련 약관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라 자산관리기관이 인출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 ② 제 1 항의 인출사유 발생시 고객은 매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 및 인출시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 **제 11 조(손익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 **제 12 조(수수료)**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에 따른 투자일임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 ② 기본수수료는 정액 또는 투자일임재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선취 또는 후취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시 잔여 계약기간까지 미경과 운용일수를 계산하여 기 수취한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한다.
- ③ 성과수수료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라 운용성과와 연동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성과수수료 산정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별지>의 수수료 지급시기에 따른다.
- ④ 고객의 해지요청시 회사는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전의 수수료 징수 이후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따른 운용성과와 연동한 성과보수 등을 받을 수 있다.
- ⑤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보수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 13 조(자산의 소유권)

-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공개매수의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서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4 조(투자일임보고서 교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고객에게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로보어드바이저 및 유지·보수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② 회사는 제 1 항 본문에 따라 교부한 투자일임보고서가 3 회 이상 반송된 경우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15 조(정보 변경시의 통지)

- ①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회사와 계약해지를 협의하도록 하며, 회사는 상속인과의 협의 내용 및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제 16 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제 17 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18 조(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을 시정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이 회사의 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 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된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2. 고객이 투자일임 대상 계좌의 회사에 대한 주문대리인 등록을 철회하는 경우
  3. 투자일임수수료가 <별지>에서 정하는 납부시기까지 미납되어 회사가 고객에게 미납 사실과 투자일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을 시정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 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 9 조의 지정기간 만료 등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는 기존 운용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한 채로 중단된다.
- ⑤ 고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19 조(투자일임재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평가한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20 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21 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또는 전자우편, SMS 등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2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 23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 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 24 조(관계법규 등의 준수)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제 25 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의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해지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 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 년 2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 3 조의 세부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투자일임대상계좌 :
- 2) 통지 및 일임보고서 교부 방법 :
- 3) 일임상품명 (유형) :
- 4) 투자대상 :
- 5) 계약기간 :
- 6) 투자일임재산 :
- 7) 투자일임재산의 출금 및 해지 :

2. 제 6 조 제 1 항의 최소계약금액, 제 6 조 제 5 항의 유형, 제 12 조 제 1 항과 제 2 항의 수수료율, 제 12 조 제 3 항과 18 조 제 1 항 제 3 호의 납부시기는 다음과 같다.

유형 (RATB 알고리즘명)	수수료율 및 납부시기		최소 계약금액	비고
	기본수수료율	성과수수료율		

3. 로보어드바이저 및 유지보수인력

4. 기타 특약사항